

제 536 호

1976.1.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화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 차

례 예

## ◎ 조례

제 제 1005 호 :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정수조례	3
제 1006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충개정조례	3
제 1007 호 : 군장성소유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 조례충 개정조례	4
제 1008 호 : 서울특별시지 봉개량에 수반한 취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충 개정조례	5
제 1009 호 :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 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충 개정조례	5
제 1010 호 : 서울특별시 먹는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충개정조례	5
제 1011 호 :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 일 과세에 관한조례충 개정조례	6

## ◎ 규칙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제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0228

제 1546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승개정규칙	3
제 1547 호 :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증개정규칙	7
제 1548 호 : 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증개정규칙	10
제 1549 호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16

◎ 고 시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9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0
제 3 호 : 1976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20
제 4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21
제 5 호 : 도시계획사업(도시고속철도)실시계획인가	24

◎ 공 고

제 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	24
제 1 호 : (중구공고)공인개각공고	25
제 1 호 : (은평출장소공고)공인개각공고	25
◎ 사 정	26
◎ 정 정	28

조 레	부 칙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에 균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별 표)
1976년 1월 10일	구 분 징수 한도액
①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05 호	사립국민학교 300 원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유 치 원 300 원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는 이에 공도한다.
제 2 조 (징수한도액) 선발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제 3 조 (징수방법) ① 선발수수료는 입학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1976년 1월 14일
② 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는 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제 5호 내지 제 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5호부터 제 20호 까지를 삭제한다.
	5. 시민복지분과 위원회 6. 유통체계개선분과 위원회 7. 교통분과 위원회 8. 관광분과 위원회 9. 환경분과 위원회

<p>10. 상수도분과 위원회 11. 지하철 운영분과 위원회 12. 민방위분과 위원회 13. 농지분과 위원회 14. 문화공보분과 위원회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8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소유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1976년 1월 14일</p> <p>●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07 호</p>	<p>군장성소유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p> <p>군장성소유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조례제목중 「군장성」 다음에 「급 」을 삽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지붕개량에 수반한 취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1976년 1월 14일</p>
---	---

##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08 호

서울특별시지봉개량에수반한취득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봉개량에 수반한 취  
득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홍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09 호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대한  
·유·홍음식세 과세면제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  
·홍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 서울특별시 조례 1010 호

서울특별시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먹는 피임약 보급 수수  
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21정일 또는 28정일 1싸이클)  
의 수수료는 이를 50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  
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11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 과세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  
음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6년 1월 14일

## 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46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중 제 2 항, 제 6 항, 제 8 항, 제  
9 항 및 제 11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 12 항을 삭제한다.

(2) 민방위 국장은 민방위 분과  
위원회를 주관한다.

(6) 보건사회국장은 다음과 분과 위  
위원회를 주관한다.

1. 보건분과위원회	제 18조 표제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를 「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 1항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복지분과위원회	(1) 산업국장은 유통체계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8) 산업국장은 유통체계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9) 건설국장은 건설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0) 지하철본부장은 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 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4조 표제 「비상계획분과위원회」를 「민방위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 1항제 5호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철의 능률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
(1) 민방위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19조 제 21조 및 제 22조를 삭제한다.
5. 소방행정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기타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시내부과징수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 잔사는 민방위과장 서기는 관리 제장이 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 [충]
제 10조 표제 「사회복지분과위원회」를 「시민복지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76년 1월 14일
(1) 시민복지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⑧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47호
6. 부녀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시내부과징수규칙 중 개정규칙
7. 아동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시내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 제 14조 및 제 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 6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9-8 제 536 호 시

四

1976.1.14

〈별지 제 65 호〉

암 뷔 기 투 대 장

압류조서

( 저 면 )

체 남 자	주소 또는 거 소	서울특별시 구 로	동 가 번지 호	제 재 년 월 일 본전 암류 및 암 류통지합니다.				
	성 명							
암 류 전 물	물건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구 로	동 번지 호	과 장				
	부동산, 차량							
표 시	동 산 기 타							
			제 장					
암류 등록 등기 등기 축탁 또는 보관 일정 보관 일정		년 월 일	등기 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등기번호	계			
암 류 에 관 련 된 체 남	체 남 액 명 세				납 부 확 인 사 항			
	세 무 연 도 기 분	책 호 기 분	세 액 기 분	가 산 금	체 남 처 분 비 제	납 부 또 는 경 락 일 자	납 부 온 행	조 사 자 성 명
암 류 이 후 체 남								
재 산 암 류 통 지	년 월 일	우편번호						

제535호

시 보

1967.1.14 29-9

해체조서								<이면>		
해체사유	화상의경우 증정부여	해체년월일	계	관련과정의	제	장	과	장	결	제
		년 월 일 우편번호								년 월 일 본전해제 및 해체통지합니다.
체납처분비	처분비총계	우편로	인수입	공고로	기타					
징수결의	원									
식인번호	년 도	번 호								

## 공매공고통지발부내역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비고
일자								

## 공매공고내역

구분	회수별 년 월 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비고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개시판 개시공고								
신문공고시 신문명 및 년 월 일								
공 고 로								
전적가격재찰후 결정액								

\* 알류조서, 알류등기(등록)속탁서, 알류통지서, 알류해제조서, 알류발소등기(등록)속탁서, 알류해제통지서 등이 원관비치는 본 기록대장 기록으로 가용할 수 있음.

0232

29-10 제 536 호 시 보

1976.1.14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1548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  
운영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 제 1항 중 「현장 대리인 등 종업원」을 「현장대리인 및 배관공(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 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업자가 전항에 의한 종업원을 두고자 할 때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종업원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종업원 신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종업원 신분증을 발급하고 동일 시 공구역 해당 구청장에게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동 신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4조 중 「현장대리인」 등을 삭제 한다.

제 25조 중 「별표 제 3호 서식」을 「별표 제 2호」로 한다.

제 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4조(권한위임) 이 규칙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시공업자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 3조, 제 9조, 제 16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 허가등에 관한 사항

2. 제 10조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3.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구역의 조정

4.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 공사비 기준액의 통보

별표 양식중 별표 명칭인 「별표

제 8호서식」을 「별표제 2호」로 한다.

별표 제 1호, 별지제 1호서식(전면),

별지제 5호서식, 별지제 6호서식 및

별지제 9호서식(전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시공업자는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를 경신하여야 한다.

제 536 호

시

보 1976. 1.14 29-11

별표 제 1 호

## 시 공 영업 허가 기준 표

기 술 능 력	법 인	개 인		
	시공기술자 2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시공기술자 1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 본 금	불입자 본금 5,000,000 원 이상	재산 평가액 2,000,000 원 이상		
시 설	1. 사무실 3평 이상 2. 창고 3평 이상			
기 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천 공 기		조	1
	오 스 다	1/2 - 1 인치	조	1
	"	1 1/2 - 2 인치	조	1
	파 이 프 렌 치	6 - 10 인치	개	3
	"	12 - 18 인치	개	2
	"	24 - 36 인치	개	1
	연 접 합 도 구		조	1
	해 빙 기	5K - 17.5K - 1	조	1
	절 단 기	13 - 50 미리미터	개	1
차 암 기			대	1
배 수 펌 프			대	1

0233

29-12 제 536 호 시 보 1976. 1. 14

별지 제 1호 서식 (전면)					처리 기간
상수도시공 영업 허가 (개신) 신청서					3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상호	소재지			
자본금 (개인)					
공자본금 (법인)					
불입자본금 (법인)					
총업원수	현장대리인	명	배관공	명	
상수도시공 영업 종목					
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기술자격증 발행처					

위와 같이 귀사 상수도공사 시공업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신규	개신	
1. 허가신청서	1. 허가 (개신) 신청서	신규 5,000원
2. 이력서	2. 영업자 납세 번호증	개신 2,000원
3. 신원증명서	3. 상수도시공 영업 허가증	
4. 재산증명서 (법인체, 법인체 등기부등본)		
5. 공사기구명세서		
6. 전화청약증명서		

시 보 1976. 1. 14. 21-13

증명서 원 신고서

성명	본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 허	자격증 번호	일자리 년월일	고지 년월일	해고 년월일	사용

19 . . .

· 상 호 :

대 표 자 :

④

총 업 원 :

④

· :

④

· :

④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0234

470

29-14 제534호

보

397-65-1314

<별지 제 6호서식>

신 분 증

자  
진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상기자는 상기 상수도 시공업체의 종업원 (현장대리인, 배관  
공)임을 증명함.

19

서울특별시 ○○구 청장 인

제536호

서

1976.1.14 22-15

&lt;별지 제9호 서식&gt; (전면)

상수도시공업자 영업장소별경신고		처리기간 3일	
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청	주소		
인	상호		
자	본금	허가사항 제호	
소	제지		
이	전지		
이	전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상수도공사시공업자 영업장소 이전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2,000원	

0235

29-16 제 539 호

시

보 1976. 1. 1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49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화재예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안전거리) ①조례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한  
및 화덕, 조례 제 3 조 제 2 항 규  
정에 의한 보이라, 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난로와 조  
례 제 6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전조설비의 설치위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문 및 가연성  
의 물품으로부터 보유하여야 할  
안전거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조례 제 16 조 제 1 호 규정에 의  
한 풍로 및 이동식난로의 연로의  
성질등에 따라 가연물로부터 보유  
하여야 할 안전거리의 기준은 별

표 2가 같다.

제 3 조 (기구 및 계양망의 충분한  
강도) 조례 제 15 조 제 5 호 규정  
에 의한 풍압 또는 마찰에 대하  
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구의 재료

가. 비닐수지 또는 고무를 입힌  
천등으로 그 재질이 고르고  
기온의 변화등에 의한 변질,  
점진기의 발생 또는 대전의  
우려가 없는 것.

나. 원단은 가소제, 품질에 의한  
착색제로 인한 점착이 없고  
거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

다. 두께는 비닐수지에 있어서는  
0.1 미리미터 이상, 고무를 입  
인 천에 있어서는 0.25 미리미  
터 이상의 것.

라. 확장력 및 신장력은 폭창  
또는 압축에 의한 내외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영화  
비닐 필름에 있어서는 대 평  
방센치미터당 150 키로그램, 고  
무를 입힌 천에 있어서는 대  
평방센치미터당 270 키로그램 이상의 것

마. 인열강도(이하『강도』라 한다)는 영화  
비닐 필름에 있어서는 「에레멘트」 강  
도 평방센치미터당 6 키로그램 이상의 것

제 536 호

시

보

1976.1.14 29-17

라. 수소가스를 부과하는 량은 1기 압, 섭씨 23도, 24시간, 1평방미 터당 5미터 이내의 것 .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의 기구에 있어서는 240키로그램 이상 직경 2.5미터 미만의 기 구에 있어서는 170키로그램 이 상의 것 .
2. 기구의 구조	
가. 계양 또는 계류중 국부적으로 현저하게 의암을 밟거나 정진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	바. 물 박테리아, 유류, 약품등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
나. 계양중 현저하게 불안전하거나 회전하지 아니하는 것 .	사. 전불등 모서리에 마찰하여도 쉽게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접착부분은 원단의 강도와 동 일 이상일 것 .	아. 흡습에 의하여 현저하게 굳어 지지 아니하는 것 .
라. 실 위음자리는 150키로 그램 의 하중에 견디는 것 .	4. 계양방등의 구조
3. 계양방등의 재료	
가. 마 또는 면 등으로 재질이 그 르고 변질, 정진기의 발생 또는 대전의 우려가 없는것 .	가. 끈실의 수 2이상의 것을 3 가닥으로 한것과 이와 동등 이 상의 강도가 있는것 .
나. 섬유는 비교적 장 섬유의 것 .	나. 현저하게 변형하거나 지나치게 비틀리지 않는 것 .
다. 계양망 및 계류망에 사용하는 망사의 긁기는 마에 있어서는 직경이 6미리미터 이상, 면에 있 어서는 7미리미터 이상의 것 .	다. 실위음은 5이상으로 하고 부 력 및 중압에 충분히 견디는것 .
라. 실 위음망에 사용하는 망사 기는 마에 있어서는 직경이 3미 리미터 이상 면에 있어서는 4미 리미터 이상의 것 .	라. 이음자는 풍압에 의하여 쉽 게 끌어지거나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것 .
가. 계양망의 절단 하중은 직경	제 4조 (안전장치) 조례 제 26조 제 15 호 ■라■목 및 농조 제 15호 ■다■목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제기하는 것으 로 한다 .

29-18 제 536 호

시

보

1976.1.14

1. 자동적으로 압력을 정지시키는 장치	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감압축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1.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의 위험물
3. 안전밸브를 적용하는 경보장치	2. 인화점이 상의 상태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전 1호 의의의 위험물
제 5조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지정) 조례 제 26조 제 16호 「마」	부 칙
특 규정에 의한 인화의 우려가 있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로 및 화약 등 안전거리**

설비 구분	보유거리		
	상충부	측면	전면
로 및 화약	사용온도가 800°C 이상의 것	2.5미터이상	2.0미터이상
	사용온도가 300°C 이상 800°C 미만의 것	1.6미터이상 (개방로에 있어서는 1.5미터이상)	2.0미터이상
	사용온도가 300°C 미만의 것	1.5미터이상 (개방로에 있어서는 1.0미터이상)	1.0미터이상
보이이라	1시간의 소비열량이 2만키로칼로리 이상의 것	1.2미터이상	0.45미터이상
	1시간의 소비열량이 2만키로칼로리 미만의 것	1.2미터이상	0.3미터이상
난로	고정식의 것.	1.5미터이상	1.0미터이상
전조설비	내용적이 1일방미터 이상의 것.	1.0미터이상	0.5미터이상
	내용적이 1일방미터 미만의 것	0.5미터이상	0.3미터이상

## &lt;별표 2&gt;

## 통로·이동식 난로 안전거리

설비구분	보유거리	
	상층부	주의
통로	고체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	1.0m 이상 0.3m 이상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것.	1.0m 이상 0.2m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것.	1.0m 이상 0.15m 이상
난로	이동식의 것.	1.0m 이상 0.5m 이상

## 고 시

1976. 1. 5

서울특별시장

## ○ 서울특별시 고시제 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66.12.17)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 사업시행의 위치: 성북구 장위동

66-7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장식로  
지내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B = 20m, L = 28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차수: 준공예정일:  
1975.6.15 ~ 76.10.1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토지조서

29-20 제 536 호

시 보

1976.1.14

## ◎ 서울특별시 고서 제 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인가

1. 전설부고시 제 581 호(71.9.30)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전설  
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광계도서는 성북구 토목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성북구 성북동

101-27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성북 2동  
지내도로 확장공사

3. 사업규모: B=12m, L=68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차수 및 준공예정일:

1975.5.12 ~ 1976.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법원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법원로  
지조사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1976년도 서울특별시

세 출예상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6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 1. 1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회 계 빌	예 산 액
일 반 회 계	104,568,828 원 원
주 대 비 특 별 회 계	21,450,000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10,500,000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1,850,003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1,432,006
유로도로비특별회계	1,095,000
시민회관비특별회계	3,271,106
청소비특별회계	3,062,454
재해구호비특별회계	72,524
수도사업특별회계	21,364,058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5,654,000
계	177,319,973

## ○ 서울특별시고시제 4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  
설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

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광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 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설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천호신시장	강남구 천호동 422-2 외 9필지	8,519坪 (2,577m <sup>2</sup> )	

\* 별첨: 도면표식과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과 관할출장소에 보관

## 수용할 토지 조서

29-22

제 5363

시

도

1976. 1. 14

번호	원				수 용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칙	지 번	지 목	지 칙	주 소	성 명			
1	성동구 용답동 204번지	하천	611	성동구 용답동 204번지	하천	73	성동구 신당동 57	윤영태	발승		
2	성동구 용답동 40-5	대	32.6	성동구 용답동 40-5	대	2.4	동대문구 보문동 7가 68	정진방	"		
3	성동구 용답동 40-4	대	28.3	성동구 용답동 40-4	대	1.8	동대문구 보문동 7가 68	정진방	"		
4	성동구 용답동 40-31	대	32.6	성동구 용답동 40-3	대	5.7	동대문구 보문동 7가 68	정진방	"		
5	성동구 용답동 36-16	대	28.7	성동구 용답동 36-16	대	9.3	서대문구 아현동 326-28	박보영	"		
6	성동구 용답동 39-15	대	45.7	성동구 용답동 39-15	대	17	서대문구 아현동 326-28	박보영	"		
7	성동구 용답동 39-18	대	38.3	성동구 용답동 39-18	대	27.1	서대문구 아현동 326-28	박보영	"		
8	성동구 용답동 39-17	대	148.3	성동구 용답동 39-17	대	8.3	서대문구 아현동 326-28	박보영	"		
9	성동구 용답동 37	대	1,066	성동구 용답동 37	대	480.6	동대문구 용두동 205-1	정선예	"		
10	성동구 용답동 28	대	2,216.1	성동구 용답동 28	대	1,444.1	동대문구 천동 454	현동운외 5인	"		
11	성동구 용답동 27	유지	6,466.8	성동구 용답동 27	유지	2,766	성동구 마장동 473	정한용	"		
12	성동구 군자동 205-459	전	289	성동구 군자동 205-459	전	233	성동구 행당동 207-1	김오동	"		
13	성동구 군자동 205-122	답	280	성동구 군자동 205-122	답	87	성동구 행당동 207-1	김오동	"		
14	성동구 군자동 205-458	답	33	성동구 군자동 205-458	답	12	성동구 행당동 207-1	김오동	"		
15	성동구 군자동 205-121	답	352	성동구 군자동 205-121	답	34	성동구 자양동 225	지춘순	"		

0239

번호	원		수 용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번	지 목	주 소	성 명
16	성동구송정동 74-205	답	780	성동구송정동 74-205	답	347
17	성동구송정동 74-193	답	153	성동구송정동 74-193	답	40
18	성동구송정동 74-177	답	364	성동구송정동 74-177	답	364
19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512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72
20	성동구송정동 74-60	답	1,291	성동구송정동 74-60	답	1,291
21	성동구송정동 74-29	답	304	성동구송정동 74-29	답	304
22	성동구송정동 74-37	답	10	성동구송정동 74-37	답	10
23	성동구송정동 74-38	답	42	성동구송정동 74-38	답	42
24	성동구송정동 74-39	답	23	성동구송정동 74-39	답	23
25	성동구송정동 74-191	답	137	성동구송정동 74-191	답	134
26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512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3
27	성동구송정동 74-198	답	263	성동구송정동 74-198	답	25
28	성동구송정동 74-199	답	171	성동구송정동 74-199	답	127
29	성동구송정동 74-207	답	205	성동구송정동 74-207	답	205
30	성동구송정동 74-206	답	306	성동구송정동 74-206	답	306
31	성동구송정동 74-25	가	219	성동구송정동 74-25	답	178
	계		16,962.4		8,074.3	

29-24 제 536 호

시

보 1976. 1. 14

● 서울특별시고시제 5호

도시계획사업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08호(75.6.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시고속철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제26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4.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공무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여 각각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가를한다.

1976. 1. 3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의 위치: 성동구 군자동 205- 송정동 74, 담실리동(현 용답동) 516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가. 용역 및 성토

나. 체도설비

다. 차량검수공장 및 부대설비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 81. 12. 31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토지조사

7.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 공 고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  
지점업체 대체지점 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지점 업체중 상호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점업체지점 및 자금지원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점 공고한다.

1976. 1. .

서울특별시장

현지점					대체지점				
지점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지점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437	해태영진 공업사	박형재	성동구 성수동 2가 315-68	염색 가공	437	기영산업 주식회사	박형재	성동구 성수동 2가 315-68	염색 가공

※ 상호변경

제 536호

시

보

1976.1.14.

29-25

## ◎ 중구 공고 제 1 호

공인개각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6 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각하였기  
동조례 제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1976.1.6

서울특별시 중구 철 광

1. 개각 사용년월일

1976. 1. 6

2. 공인개각인명

## 신당 제 1 동 광 인

(1)



(2)



(3)



(4)



## ◎ 운정풀장소 공고 제 1 호

공인개각 공고

1976년 2월 1일부터 운정풀장소장  
직인을 평인 규정제2 조 4 항 및 제8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신 사용  
함을 공고함.

1976. 1. 6

운정풀장소장

## 운정풀장소장의 직인 및 개인인명

직



인

개



인

0240

29-26 제 536 호

시

보 1976.1.14

사 령

◎ 1976.1.7 자

용산구 지방도록 짐봉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성동구보전소 지방행정 사무관 장순무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이든화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연로과 지방행정 정호진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성동구보전소 지방행정 민옹식  
사무관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기관리 지방행정 조병호  
사무관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충무령원 사무관 흥연표

충무처소청실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경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도로보수과 도록기과 김재석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 1976.1.8 자

시민과 주사로 유상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서 기 징 호 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도 농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진 태 흥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동 대 문 구 주 사 보 징 정 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중 구 보 전 소 서 기 박 치 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지 방 공무원 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의 규 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서 대 문 구 지방토목 박재간
중 구 보 전 소 서 기 강 길 웅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지 방 공무원 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의 규 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광· 악 구 지방토목 흥연구
서 대 문 구 지방서기관 이진송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수 도 관 리 지방도록 강순천
의 규 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광· 악 구 지방서기관 안병태	하 수 과 지방도록 이조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의 규 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업 무 과 지방행정 능병규
④ 1976. 1. 12 자 도로보수과 지방토목 기자회견 명가영	동 대 문 관무를 명함. 충 무 과 지방행정 김현중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관무를 명함

<p>경북대구 지방행정 도청 정 충무국 사무관 도명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수도국 업무파에 산계장에 보함. 서대문보건소 지방간호부 보 임인숙 75.12.16자 발령 834호 신규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본인포기) 경기도이천군 지방보건 보건소 기원보시보 반영환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보건기획보시보에 임함. 초임호봉을 급함. 충로구근무를 명함. 기전과 기원보 흥남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⑤ 1976.1.14자 시정개발 지방행정 담당관 주사보 임여빈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충구서지방행정 지광남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1항제2호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지방행정 최성원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1항제2호외</p>	<p>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서기 김기홍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1항제2호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서기 김갑수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1항제2호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농대문구 서기 고판석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1항제2호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⑥ 1976.1.15자 도봉구 지방의무 보건소장 김진외 서대문구보건소장에 임함. 경기도 지방의무 이옹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의무기과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소장직무 대리 를 명함.</p>
---	---

정 정

제 536 호 시

보 1976.1.14 29-29

조례 999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  
별표 1 중 “의무직 공무원조정수당지급  
구분”을 “의무직공무원조정수당지급  
구분”으로 정정함.

1976. 1.14

서 울 특 별 시 장

시보제 535호(75.12.31) 7페이지  
조례 1004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별표증  
“19.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회사보증금보증책임원”을 “19. 공  
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설적증명”  
으로 “42. 국제결혼신고”를 “42.  
국제결혼증명”으로 각각 정정함.

1976. 1.14

서 울 특 별 시 장

서 울 특 별 시

0242